



의안번호	제 2011 - 13 호
의 결 연 월 일	2011. 6. 14. (제35차 회의)

보
고
안
건

운영지원단 업무보고

제 출 자	운영지원단장
-------	--------



목 차

I. 양형기준 시행 경과 보고	1
1. 사건 접수	1
2. 처리 현황	7
II.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위반 범죄 및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위반 범죄 통계 분석 보고 ..	13
1. 분석 배경 및 대상 사건의 범위	13
2. 통계 분석 실시 내용	13
III. 전문위원 업무 지원	15
1. 회의 지원	15
IV. 전문위원 위촉 및 위촉식 개최	16
1. 개요	16
2. 추진 내역	16
3. 전문위원 위촉식 개최	18
V. 양형기준 책자 발간	19
1. 개요	19
2. 추진 경과	19
3. 제작 내역	19

4. 국회 보고	19
5. 기타 기관 배부	19
VI. 양형기준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22
1. 개요	22
2. 추진 일정	22
VII. 각종 의견 접수 및 처리	23
1. ‘양형위원회에 바란다’ 접수의견 보고	23
2. 정보공개 청구 및 회신	23
<input type="checkbox"/> 별지 전문위원 후보 프로필	



I. 양형기준 시행 경과 보고

1. 사건 접수

○ 8개 범죄 양형기준이 시행에 들어간 2009. 7. 1.부터 2011. 3. 31. 까지 법원에 접수된 8개 범죄 사건의 죄명별 현황은 아래와 같음

◆ 단일범 내지 동종경합범 ◆

범죄	세부죄명	2009년 하반기	2010년	2011년 1월~3월			전체
				고합	고단	고정	
살인 죄	살인	125	219	39	-	-	383
	살인미수	188	324	66	-	-	578
	존속살해	10	16	4	-	-	30
	존속살해미수	6	14	2	-	-	22
	전체	329	573	111	-	-	1,013
뇌물 죄	뇌물공여	248	526	43	40	7	864
	뇌물수수	139	323	24	38	0	524
	부정처사후수뢰	8	11	-	-	-	19
	수뢰후부정처사	4	15	3	1	0	23
	제3자뇌물교부	10	31	3	3	0	47
	제3자뇌물취득	3	22	3	4	0	32
	특가법(뇌물)	34	75	17	0	0	126
	전체	446	1,003	93	86	7	1,635
성 범 죄	강간	37	86	15	0	0	138
	강간살인	1	0	-	-	-	1
	강간상해	46	121	26	0	0	193
	강간치사	0	1	-	-	-	1
	강간치상	142	255	39	0	0	436
	강도강간	6	3	-	-	-	9
	강제추행	282	631	12	50	93	1,068
	강제추행상해	13	29	9	0	0	51
	강제추행치상	53	83	18	0	0	154
	미성년자의제강간	6	13	1	0	0	20

범죄	세부죄명	2009년 하반기	2010년	2011년 1월~3월			전체
				고합	고단	고정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	0	1	-	-	-	1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22	22	-	-	-	44
	성폭력범죄(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194	164	7	0	0	365
	성폭력범죄(강간등살인)	2	1	1	0	0	4
	성폭력범죄(강간등상해)	43	41	2	0	0	86
	성폭력범죄(강간등치상)	59	38	-	-	-	97
	성폭력범죄(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58	54	8	0	2	122
	성폭력범죄(절도강간등)	8	7	1	0	0	16
	성폭력범죄(주거침입강간등)	117	60	4	0	0	181
	성폭력범죄(친족관계에의한강간)	21	17	2	0	0	40
	성폭력범죄(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28	33	2	0	0	63
	성폭력범죄(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4	6	-	-	-	10
	성폭력범죄(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5	5	1	0	0	11
	성폭력범죄(특수강간)	122	104	5	0	0	231
	성폭력범죄(특수강도강간등)	31	21	3	0	0	55
	성폭력범죄(특수강제추행)	10	8	-	-	-	18
	성폭력범죄(특수준강간)	28	47	1	0	0	76
	성폭력범죄(특수준강제추행)	0	2	-	-	-	2
	성폭력범죄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0	185	42	0	2	229
	성폭력범죄특례법(강간등상해)	0	48	18	0	0	66
	성폭력범죄특례법(강간등치상)	0	61	12	0	0	73
	성폭력범죄특례법(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0	52	12	3	1	68
	성폭력범죄특례법(절도강간등)	0	5	1	0	0	6
	성폭력범죄특례법(주거침입강간등)	0	132	36	0	0	168
	성폭력범죄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강간)	0	6	5	0	0	11
	성폭력범죄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0	23	10	0	0	33
	성폭력범죄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0	0	2	0	0	2
	성폭력범죄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0	4	1	0	0	5
	성폭력범죄특례법(특수강간)	0	103	32	0	0	135
	성폭력범죄특례법(특수강도강간등)	0	13	7	0	0	20
	성폭력범죄특례법(특수강제추행)	0	4	1	0	0	5

범죄	세부죄명	2009년 하반기	2010년	2011년 1월~3월			전체
				고합	고단	고정	
	성폭력범죄특례법(특수준강간)	0	40	21	2	0	63
	성폭력범죄특례법(특수준강제추행)	0	0	1	0	0	1
	아동·청소년성보호법(강간등)	0	550	114	2	17	683
	준강간	27	84	15	0	0	126
	준강간치상	3	8	3	0	0	14
	준강제추행	64	139	6	19	8	236
	준강제추행치사	0	0	1	0	0	1
	준강제추행치상	2	0	0	1	0	3
	청소년성보호법(청소년강간등)	227	61	-	-	-	288
	전체	1,661	3,371	497	77	123	5,729
강 도 죄	강도	41	64	12	-	-	117
	강도살인	6	6	1	-	-	13
	강도상해	251	333	54	-	-	638
	강도치사	0	4	-	-	-	4
	강도치상	16	15	6	-	-	37
	준강도	37	42	6	-	-	85
	준특수강도	5	7	2	-	-	14
	특가법(강도)	5	4	1	-	-	10
	특가법(강도상해등재범)	2	2	2	-	-	6
	특수강도	146	233	52	-	-	431
	전체	509	710	136	-	-	1,355
횡 령 · 배 임 죄	배임	342	437	3	75	15	872
	업무상배임	167	332	6	46	16	567
	업무상횡령	1,132	1,869	9	257	86	3,353
	특경가법(배임)	90	162	45	0	0	297
	특경가법(횡령)	100	246	47	0	0	393
	횡령	1,148	1,738	3	208	148	3,245
	전체	2,979	4,784	113	586	265	8,727
위 증 죄	모해위증	8	12	0	2	0	22
	위증	811	1,300	1	200	85	2,397
	위증교사	50	198	0	43	1	292

범죄	세부죄명	2009년 하반기	2010년	2011년 1월~3월			전체
				고합	고단	고정	
	전체	869	1,510	1	245	86	2,711
무 고 죄	무고	966	1,620	14	241	112	2,953
	특가법(무고)	5	3	-	-	-	8
	전체	971	1,623	14	241	112	2,961
총 계		7,764	13,574	965	1,235	593	24,131

◆ 이중경합범(8개 범죄가 대표죄명에 해당하는 경우) ◆

범죄	세부죄명	2009년 하반기	2010년	2011년 1월~3월			전체
				고합	고단	고정	
살 인 죄	살인	59	117	24	-	-	200
	살인미수	81	110	19	-	-	210
	존속살해	10	7	1	-	-	18
	존속살해미수	1	3	1	-	-	5
	전체	151	237	45	-	-	433
뇌 물 죄	뇌물공여	61	219	35	25	2	342
	뇌물수수	29	135	22	14	0	200
	부정처사후수뢰	4	21	-	-	-	25
	수뢰후부정처사	6	25	4	2	0	37
	제3자뇌물교부	4	21	1	3	0	29
	제3자뇌물취득	1	14	3	3	0	21
	특가법(뇌물)	23	66	4	0	0	93
	전체	128	501	69	47	2	747
성 범 죄	강간	61	109	26	0	0	196
	강간살인	1	2	1	0	0	4
	강간상해	45	68	17	0	0	130
	강간치사	0	1	-	-	-	1
	강간치상	56	87	20	0	0	163
	강도강간	14	14	1	0	0	29
	강제추행	145	320	32	49	36	582
	강제추행상해	4	8	2	0	0	14

범죄	세부직명	2009년 하반기	2010년	2011년 1월~3월			전체
				고합	고단	고정	
	강제추행치상	22	51	6	0	0	79
	미성년자의제강간	2	9	-	-	-	11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	0	2	1	0	0	3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2	6	4	0	0	12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상	0	0	1	0	0	1
	성폭력범죄(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65	111	3	0	0	179
	성폭력범죄(강간등살인)	3	4	-	-	-	7
	성폭력범죄(강간등상해)	30	31	-	-	-	61
	성폭력범죄(강간등치상)	47	32	1	0	0	80
	성폭력범죄(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8	9	1	0	0	18
	성폭력범죄(절도강간등)	8	7	-	-	-	15
	성폭력범죄(주거침입강간등)	70	56	8	0	0	134
	성폭력범죄(친족관계에의한강간)	25	32	1	0	0	58
	성폭력범죄(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0	0	1	0	0	1
	성폭력범죄(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17	27	20	0	0	64
	성폭력범죄(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1	4	-	-	-	5
	성폭력범죄(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2	12	6	0	0	20
	성폭력범죄(특수강간)	84	80	1	0	0	165
	성폭력범죄(특수강도강간등)	100	68	5	0	0	173
	성폭력범죄(특수강제추행)	13	10	-	-	-	23
	성폭력범죄(특수준강간)	21	16	-	-	-	37
	성폭력범죄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0	75	14	1	0	90
	성폭력범죄특례법(강간등상해)	0	35	6	0	0	41
	성폭력범죄특례법(강간등치상)	0	31	4	0	0	35
	성폭력범죄특례법(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0	12	1	2	0	15
	성폭력범죄특례법(절도강간등)	0	7	4	0	0	11
	성폭력범죄특례법(주거침입강간등)	0	58	9	1	0	68
	성폭력범죄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강간)	0	27	9	0	0	36
	성폭력범죄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0	14	5	0	0	19
	성폭력범죄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0	1	-	-	-	1
	성폭력범죄특례법(특수강간)	0	82	22	0	0	104

범죄	세부죄명	2009년 하반기	2010년	2011년 1월~3월			전체
				고합	고단	고정	
	성폭력범죄특례법(특수강도강간등)	0	59	12	0	0	71
	성폭력범죄특례법(특수강제추행)	0	12	7	0	0	19
	성폭력범죄특례법(특수준강간)	0	11	8	1	0	20
	성폭력범죄특례법(특수준강제추행)	0	1	2	0	0	3
	아동·청소년성보호법(강간등)	0	235	37	1	1	274
	준강간	11	27	3	1	0	42
	준강간치상	1	6	-	-	-	7
	준강제추행	11	26	3	2	0	42
	준강제추행치상	1	1	-	-	-	2
	청소년성보호법(청소년강간등)	78	28	-	-	-	106
	전체	948	1,924	304	58	37	3,271
강 도 죄	강도	62	90	23	-	-	175
	강도살인	15	30	4	-	-	49
	강도상해	233	357	84	-	-	674
	강도치사	1	4	1	-	-	6
	강도치상	16	32	4	-	-	52
	준강도	20	48	15	-	-	83
	준특수강도	2	9	-	-	-	11
	특가법(강도)	3	8	1	-	-	12
	특가법(강도상해등재범)	4	7	3	-	-	14
	특강법(특수강도)	2	0	-	-	-	2
	특수강도	176	321	126	-	-	623
전체	534	906	261	-	-	1,701	
횡 령 · 배 임 죄	배임	34	145	1	23	5	208
	업무상배임	114	318	20	38	8	498
	업무상횡령	388	915	42	162	29	1,536
	특경가법(배임)	60	171	24	1	0	256
	특경가법(횡령)	95	267	36	2	0	400
	횡령	286	836	19	122	30	1,293
	전체	977	2,652	142	348	72	4,191

범죄	세부죄명	2009년 하반기	2010년	2011년 1월~3월			전체
				고합	고단	고정	
위 증 죄	모해위증	4	6	0	1	0	11
	위증	51	108	2	23	2	186
	위증교사	0	31	1	7	0	39
	전체	55	145	3	31	2	236
무 고 죄	무고	177	461	13	85	11	747
	특가법(무고)	1	4	1	1	0	7
	전체	178	465	14	86	11	754
총 계		2,971	6,830	838	570	124	11,333

- 위 통계에는 피고인이 소년인 사건, 정식재판청구사건, 미수범사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사건 등까지 포함되어 있어 실제로 양형기준이 적용될 사건 수는 이보다 적을 것으로 보임

2. 처리 현황

- 2009. 7. 1. 이후 공소가 제기된 8개 범죄 사건(단일범, 경합범)으로서 2011. 3. 31. 까지 제1심 법원에서 처리된 현황은 아래와 같음

☞ 범죄군별 처리건수

처리기간	범죄군		사건 구분			전체
			고합	고단	고정	
2009년 하반기	살인죄	수	286	0	0	286
		비율	100.0%	0.0%	0.0%	100.0%
	뇌물죄	수	46	73	1	120
		비율	38.3%	60.8%	0.8%	100.0%
	성범죄	수	960	96	60	1,116
		비율	86.0%	8.6%	5.4%	100.0%
	강도죄	수	563	1	0	564

처리기간	범죄군		사건 구분			전체
			고합	고단	고정	
	횡령·배임죄	비율	99.8%	0.2%	0.0%	100.0%
		수	101	990	286	1,377
		비율	7.3%	71.9%	20.8%	100.0%
	위증죄	수	6	310	41	357
		비율	1.7%	86.8%	11.5%	100.0%
	무고죄	수	6	252	92	350
		비율	1.7%	72.0%	26.3%	100.0%
	전체	수	1,968	1,722	480	4,170
		비율	47.2%	41.3%	11.5%	100.0%
	2010년	살인죄	수	736	0	0
비율			100.0%	0.0%	0.0%	100.0%
뇌물죄		수	548	512	15	1,075
		비율	51.0%	47.6%	1.4%	100.0%
성범죄		수	3,294	366	269	3,929
		비율	83.8%	9.3%	6.8%	100.0%
강도죄		수	1,421	2	0	1,423
		비율	99.9%	0.1%	0.0%	100.0%
횡령·배임죄		수	719	4,437	1,097	6,253
		비율	11.5%	71.0%	17.5%	100.0%
위증죄		수	41	1,272	192	1,505
		비율	2.7%	84.5%	12.8%	100.0%
무고죄		수	45	1,311	339	1,695
		비율	2.7%	77.3%	20.0%	100.0%
전체		수	6,804	7,900	1,912	16,616
		비율	40.9%	47.5%	11.5%	100.0%
2011년 1월~3월	살인죄	수	147	0	0	147
		비율	100.0%	0.0%	0.0%	100.0%
	뇌물죄	수	172	90	3	265
		비율	64.9%	34.0%	1.1%	100.0%
	성범죄	수	748	92	75	915
		비율	81.7%	10.1%	8.2%	100.0%

처리기간	범죄군		사건 구분			전체
			고합	고단	고정	
	강도죄	수	265	0	0	265
		비율	100.0%	0.0%	0.0%	100.0%
	횡령·배임죄	수	214	1,010	222	1,446
		비율	14.8%	69.8%	15.4%	100.0%
	위증죄	수	1	304	48	353
		비율	0.3%	86.1%	13.6%	100.0%
	무고죄	수	16	313	58	387
		비율	4.1%	80.9%	15.0%	100.0%
	전체	수	1,563	1,809	406	3,778
		비율	41.4%	47.9%	10.7%	100.0%

☞ 세부죄명별 처리건수

범죄군	세부죄명	2009년 하반기	2010년	2011년 1월~3월	전체
살인죄	살인	105	315	53	473
	살인미수	170	382	86	638
	존속살해	7	26	4	37
	존속살해미수	4	13	4	21
	전체	286	736	147	1,169
뇌물죄	뇌물공여	59	558	136	753
	뇌물수수	46	280	81	407
	부정처사후수뢰	2	26	1	29
	수뢰후부정처사	2	27	10	39
	제3자뇌물교부	3	50	3	56
	제3자뇌물취득	4	32	5	41
	특가법(뇌물)	4	102	29	135
	전체	120	1,075	265	1,460
성범죄	강간	38	128	26	192
	강간살인	1	0	0	1
	강간상해	49	175	39	263

범죄군	세부죄명	2009년 하반기	2010년	2011년 1월~3월	전체
	강간치사	0	2	0	2
	강간치상	104	313	54	471
	강도강간	4	24	2	30
	강제추행	127	548	156	831
	강제추행상해	11	39	9	59
	강제추행치상	40	115	19	174
	미성년자의제강간	3	16	3	22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	0	4	0	4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9	19	3	31
	성폭력범죄(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124	302	23	449
	성폭력범죄(강간등살인)	4	3	0	7
	성폭력범죄(강간등상해)	40	83	2	125
	성폭력범죄(강간등치상)	50	90	3	143
	성폭력범죄(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27	82	6	115
	성폭력범죄(절도강간등)	11	18	1	30
	성폭력범죄(주거침입강간등)	115	168	6	289
	성폭력범죄(친족관계에의한강간)	26	57	9	92
	성폭력범죄(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23	69	10	102
	성폭력범죄(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2	7	3	12
	성폭력범죄(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4	10	3	17
	성폭력범죄(특수강간)	91	165	11	267
	성폭력범죄(특수강도강간등)	60	132	5	197
	성폭력범죄(특수강제추행)	11	21	0	32
	성폭력범죄(특수준강간)	7	54	1	62
	성폭력범죄(특수준강제추행)	0	0	2	2
	성폭력범죄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0	154	64	218
	성폭력범죄특례법(강간등살인)	0	1	1	2
	성폭력범죄특례법(강간등상해)	0	40	19	59
	성폭력범죄특례법(강간등치사)	0	2	0	2
	성폭력범죄특례법(강간등치상)	0	59	14	73
	성폭력범죄특례법(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0	27	23	50

범죄군	세부죄명	2009년 하반기	2010년	2011년 1월~3월	전체
	성폭력범죄특례법(절도강간등)	0	9	3	12
	성폭력범죄특례법(주거침입강간등)	0	137	44	181
	성폭력범죄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강간)	0	21	11	32
	성폭력범죄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0	26	15	41
	성폭력범죄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0	0	2	2
	성폭력범죄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0	4	3	7
	성폭력범죄특례법(특수강간)	0	56	39	95
	성폭력범죄특례법(특수강도강간등)	0	45	16	61
	성폭력범죄특례법(특수강제추행)	0	7	3	10
	성폭력범죄특례법(특수준강간)	0	17	22	39
	아동·청소년성보호법(강간등)	0	419	201	620
	준강간	7	56	10	73
	준강간치상	2	10	1	13
	준강제추행	32	104	20	156
	준강제추행치상	1	3	1	5
	청소년성보호법	1	0	0	1
	청소년성보호법(강간등)	0	0	3	3
	청소년성보호법(청소년강간등)	92	88	4	184
	전체	1,116	3,929	915	5,960
	강도죄	강도	66	159	23
강도살인		10	33	7	50
강도상해		238	570	123	931
강도치사		1	4	3	8
강도치상		15	54	5	74
준강도		43	92	18	153
준특수강도		8	14	1	23
특가범(강도)		4	12	1	17
특가범(강도상해등재범)		2	9	3	14
특강범(특수강도)		0	1	0	1
특수강도		177	475	81	733
전체		564	1,423	265	2,252

범죄군	세부죄명	2009년 하반기	2010년	2011년 1월~3월	전체
횡령· 배임죄	배임	111	513	132	756
	업무상배임	71	439	124	634
	업무상횡령	602	2,484	512	3,598
	특경가법(배임)	27	190	46	263
	특경가법(횡령)	33	334	110	477
	횡령	533	2,293	522	3,348
	전체	1,377	6,253	1,446	9,076
위증죄	모해위증	3	14	3	20
	위증	296	1,260	288	1,844
	위증교사	58	231	62	351
	전체	357	1,505	353	2,215
무고죄	무고	349	1,687	385	2,421
	특가법(무고)	1	8	2	11
	전체	350	1,695	387	2,432
총계		4,170	16,616	3,778	24,564

II.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443조 위반 범죄 및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위반 범죄 통계 분석 보고

1. 분석 배경 및 대상 사건의 범위

- 전문위원 제40차 전체회의(2011. 5. 23.)에서 금융경제범죄 중 자본시장법위반 등 범죄에 관해서는 통계 또는 실증적 자료를 검토한 후 3기 양형기준 설정대상 범죄의 포함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는데 의견이 일치됨
- 운영지원단에서는 최근 5년간(2006. 5. 1. ~ 2011. 4. 30.) 선고된 사건 중 징역형이 주로 선고되는 범죄유형인 자본시장법 제443조 위반 범죄 및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위반 범죄에 관하여 통계 분석 실시

2. 통계 분석 실시 내용

가. 해당 기간 전체 구공판 사건 중 자본시장법 및 구 증권거래법 위반 전체 사건이 차지하는 비율

	전체사건	증권거래법(A)	자본시장법(B)	(A) + (B)
사건 수	596,094	649	73	722
비율 (전체대비)	-	0.11%	0.01%	0.12%

♠ 징역형 이상 중 증권거래법 및 자본시장법 사건의 비율, 고정사건 제외

나. 해당 기간 전체 구공판 사건 중 분석대상 사건(자본시장법 제443조 및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위반 범죄)이 차지하는 비율

	전체 사건	증권거래법(A)	자본시장법(B)	(A) + (B)
사건 수	596,094	501	45	546
비율 (전체대비)	-	0.08%	0.01%	0.09%

♠ 이중 경합사건(147건) 및 병합된 사건 26건이 포함됨

다. 해당 기간 선고된 분석대상 사건(자본시장법 제443조 및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위반 범죄)의 형량분석

(1) 선고 내역

사건명	선고내역	선고 내역		전체
		실형	집행유예	
자본시장법	수	3	33	36
	비율	8.3%	91.7%	100.0%
증권거래법	수	78	259	337
	비율	23.1%	76.9%	100.0%
전체	수	81	292	373
	비율	21.7%	78.3%	100.0%

♠ ‘나.’ 사건 중 이중경합 및 병합된 사건을 제외하고 분석함

(2) 평균형량 및 형량분포

(가) 평균형량

사건명	사건 수	평균(개월)	표준편차
자본시장법	36	19.56	12.758
증권거래법	337	18.49	10.860
전체	373	18.59	11.042

(나) 형량분포

사건명		형량															
		4월	6월	8월	10월	12월	14월	18월	22월	24월	30월	36월	42월	48월	60월	84월	전체
자본 시장법	수	0	0	5	1	5	0	14	0	7	3	0	0	0	0	1	36
	비율 (%)	0.0	0.0	13.9	2.8	13.9	0.0	38.9	0.0	19.4	8.3	0.0	0.0	0.0	0.0	2.8	100
증권 거래법	수	1	24	29	38	63	1	79	2	23	46	16	9	3	2	1	337
	비율 (%)	0.3	7.1	8.6	11.3	18.7	0.3	23.4	0.6	6.8	13.6	4.7	2.7	0.9	0.6	0.3	100
전체	수	1	24	34	39	68	1	93	2	30	49	16	9	3	2	2	373
	비율 (%)	0.3	6.4	9.1	10.5	18.2	0.3	24.9	0.5	8.0	13.1	4.3	2.4	0.8	0.5	0.5	100

III. 전문위원 업무 지원

1. 회의 지원

- 운영지원단(기획운영과, 통계분석과)은 전문위원 전체회의의 회의자료 준비, 회의록 작성 등의 지원업무를 수행하였음
- 전문위원 회의 현황

회의명		일시	안건
전문위원 전체회의	제40차	2011. 5. 23. 16:00	○ 제3기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 검토

IV. 전문위원 위촉 및 위촉식 개최

1. 개요

- 이상원 전문위원(2011. 4. 27.)과 서봉규 전문위원(2011. 4. 29.)의 전문위원직 사임원 제출에 따라 양형위원회 운영규정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2011. 5. 16.자로 전문위원직에서 해촉
 - 서봉규 전문위원은 일신상의 사유로 직무 수행 불가
 - 이상원 전문위원은 양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직무 수행 불가
- 2011. 5. 23.자로 정준화 전문위원의 임기 만료
-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전문위원 위촉

◆ 관련 규정 ◆

양형위원회 규칙 제8조 (전문위원)

-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적인 조사·연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15인 이내의 비상근 전문위원을 둔다.
- ② 전문위원은 양형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법관, 검사, 변호사, 교수 또는 기타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되, 법관 중 1인을 수석전문위원으로 지명한다.

2. 추진 내역

가. 고려사항

- 연구업무의 연속성 확보 및 분위기 쇄신
 - 종전 연구 성과를 토대로 추가 양형기준 설정을 위한 업무 수행
- 정기적인 업무수행 평가를 통해 전문위원 제도의 보다 효율적인 운영 방안 마련
 - 그동안의 전문위원의 연구 성과와 활동내역을 객관적으로 검토·평가하여 개선방안 모색

○ 전문위원 선정원칙의 반영

- 위원회의 중립성과 독립성 유지·강화
- 전문위원 연령 및 전문성 고려
- 다양한 전공분야 안배
- 추천 기관 또는 위원 의견 존중

나. 위촉 방안

(1) 연임 위촉

- 정준화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정책심의관(2011. 5. 24.자 연임)

(2) 신규 위촉

- 이정훈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2011. 5. 16.자 위촉)
- 이주원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2011. 5. 16.자 위촉)
- 이진국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2011. 5. 16.자 위촉)
- 조석영 대검찰청 연구관(검사)(2011. 5. 16.자 위촉)
 - 서봉규 전문위원 후임

※ 신임 전문위원의 자세한 경력은 <별첨> 전문위원 후보 프로필
기재 참조

다. 진행 경과

- 2011. 5. 11. 위촉(안) 결재 보고
- 2011. 5. 13. 위원장 결재
- 2011. 6. 14. 위촉식 개최 예정

라. 전문위원 구성(안)

구분	팀장	법관	검사	변호사	교수	교수 /전문가	교수 /전문가
수석전문위원	최동렬						
총괄팀	최동렬	홍준호	심재철				
제1팀	홍준호	/	조석영	범 현	이주원	이진국	조은경
제2팀	심재철	정준화	/	박영식	강우예	김혜정	이정훈

3. 전문위원 위촉식 개최

- 일 시 : 2011. 6. 14.(화) 16:00
- 장 소 : 대법원 중회의실(404호)
- 참석범위 : 위원장, 상임위원, 양형위원, 수석전문위원, 운영지원단장,
기획운영과장
- 위촉대상자 : 이정훈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이주원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진국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조석영 대검찰청 연구관(검사)

V. 양형기준 책자 발간

1. 개요

- 양형위원회는 법원조직법 제81조의6 제4항 및 양형위원회 규칙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양형기준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음
- 이에 제2기 양형기준을 관보에 게재하는 외에 양형기준 책자의 발간을 통해 공개하였음을 보고

2. 추진 경과

- 제2기 양형기준 책자 발간 계획(안) 결재 : 2011. 4. 25.
- 초안 완성 및 견본 제작 : 2011. 5. 11.
- 교정 작업 및 인쇄 의뢰 : 2011. 5. 16.
- 배부 및 국회 보고 : 2011. 5. 27.

3. 제작 내역

- 발간 부수 : 8,000부
- 책자 규격 및 분량
 - 16절(1도 인쇄, 46배판)
 - 352쪽

4. 국회 보고

- 국회의원실 방문하여 양형기준 책자 인편으로 배송 완료

5. 기타 기관 배부

- 배부원칙

- 양형기준 책자의 적정한 배포 및 관리
- 예산낭비 방지 및 활용의 극대화

○ 배부기준

- 홍보가치와 경제성을 고려하여 활용도가 높은 기관 우선 배부
- 필요적 이용기관과 연구기관 선정 배부
- 사법발전에 기여하거나 자료가치를 높이는 부서에 배부

○ 배부처

- 법원(대법원,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등)
- 헌법재판소
- 행정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검찰청
- 지방자치단체(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등)
- 유관기관(대한변협, 대한법무사협회,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 학회 등
- 시민단체(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등)
- 언론기관(법조출입 30개 언론사)
- 도서관(대학도서관, 공공도서관 등)

○ 배부표

- 구체적 배부내역은 아래 배부표와 같음

【양형기준 책자 배부표】

배부처		구 분	수 량	비 고
법 원			3,081	대법원,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고등(특허)법원, 지방법원
국 회			400	국회사무처 의사국 의안과에 배송 (국회의장·부의장, 국회의원, 법사위 행정실, 국회도서관, 국회사무총장 등)
헌법재판소			81	헌법재판관, 사무처장, 헌법연구관
행 정 부			1,097	대통령실, 감사원, 국가정보원, 국무총리실, 법제처, 기획재정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국가기록원,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5	
검 찰 청			2,152	청용 및 검사 개인용
지 방 자 치 단 체			32	16개 광역자치단체
유 관 기 관			143	대한변협, 대한법무사협회, 대한법률구조공단
학 회 등			29	한국법학교수회, 한국교정학회, 한국범죄방지재단, 한국법학원,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한국피해자학회, 한국형사법학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형사정책학회
시 민 단 체 등			42	경제개혁연대, 경실련, 한국YWCA연합회, 민변,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전경련, 참여연대,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성폭력상담소, 헌법을생각하는변호사모임
언론기관			128	법조출입 32개 언론사
도 서 관	대학도서관		112	56개 주요대학도서관 각 2부
	공공도서관		45	국립중앙도서관 5부 전국 주요 공공도서관 20개소 각 2부
전국대학교수(형사법전공)			219	
양형 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		51	전직 위원 및 전문위원 포함
	운영지원단		383	보존용 및 예비용
총 계			8,000	

VI. 양형기준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1. 개요

- 양형위원회에서 의결된 양형기준은 형사재판절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를 공개할 필요가 있음
- 인터넷 홈페이지(<http://sc.scourt.go.kr>)상의 양형기준 공개는 양형기준의 대국민적 홍보와 양형기준 개선 논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이에 제2기 양형기준을 관보에 게재하고 양형기준 책자를 발간하는 외에 양형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를 통해 공개할 예정임을 보고

2. 추진 일정

- 양형위원회 홈페이지 게재 의뢰 : 2011. 5. 23.(법원행정처 정보화심의관실)
- 양형위원회 홈페이지 게재 시기 : 2011. 6. 하순

Ⅶ. 각종 의견 접수 및 처리

1. ‘양형위원회에 바란다’ 접수 의견 보고

○ 양형위원회의 활동 및 양형에 관한 정책 건의, 제안 등을 듣고자 하는 국민 참여 공간인 ‘양형위원회에 바란다’(<http://sc.scourt.go.kr>)에 접수된 의견 보고

○ 접수 의견

순번	접수일자	의견요지
1	2011. 4. 28.	○ 자신의 억울한 사연과 관련하여 구제를 하여 달라는 내용의 의견 개진
2	2011. 5. 12.	○ 사기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알고 싶다는 내용의 의견 개진
3	2011. 5. 13.	○ 음주로 인하여 발생한 범죄에 있어 음주가 양형감경인자로 고려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 개진

○ 처리결과

- 1번 의견 개진과 관련하여서는 양형기준의 설정·변경 업무를 담당하는 양형위원회와 관련이 없는 내용으로 답변 드리지 못함을 양해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답변
- 2번 의견 개진과 관련하여서는 대한민국 전자관보(2011. 4. 15.)에 게재되어 있으며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등에서 열람 및 복사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답변
- 음주가 양형감경인자로 고려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과 관련하여서는 양형위원회 회의 또는 전문위원 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회 회의나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으로 답변

2. 정보공개 청구 및 회신

○ 정보공개 청구

순번	접수일자	공개청구 요지
1	2011. 5. 17.	○ 마약범죄와 관련하여 정보제공을 적극적으로 하여 범인 검거에 협조하였을 때 감경에 대한 양형기준 공개 청구

○ 회신결과

- 마약범죄 양형기준은 관보(2011. 4. 15.자)에 게재되어 이미 공개된 정보이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정보공개 대상이 아니며 공개 청구한 마약범죄 양형기준은 2011. 5. 말경 인쇄하여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및 관계기관(교도소 포함) 등에 배포하였으므로 그곳에서 열람 및 복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회신

<별지>

신임위촉 전문위원 후보자 프로필

이정훈(李政勳)

	1969. 12. 27.생(41세)	
	출 신 지	부산
	직 위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학 력】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학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졸업(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졸업(법학박사)

【경 력】

 - 2000. 4. 대법원판례심사위원회 조사위원
2004. 1. - 2006. 12. 한국형사정책학회 편집간사
2007. 2. - 2007. 12. 국가청소년위원회 정책자문위원
2006. 사법시험 출제위원
2005. 11. - 2006. 10. 2010 게임산업 전략위원회 법제도 분과위원회 위원
2007. 12. - 2009. 11. 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
2009. 1. - [現] 한국경찰법학회 이사

이주원(李柱元)

	1965. 6. 16.생(45세)	
	출 신 지	강원 강릉
	직 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학 력】

1983.	강릉고등학교 졸업
1987.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학사)
2001. 8. - 2002. 8.	독일 프랑크푸르트대학 수학(국외교육훈련)

【경 력】

1989.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1992.	사법연수원 제21기 수료
1992. 2. - 1995. 2.	해군법무관
1995. 3. - 1998. 8.	청주지방법원 판사
1998. 9. - 2003. 2.	수원지방법원 판사
2003. 2. - 2004. 7.	서울고등법원 판사
2004. 8. - 2005. 2.	인천지방법원 판사
2005. 2. - 2007. 2.	대법원 재판연구관
2007. 2. - 2008. 2.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2008. 2. -	변호사 개업
2009. 3. - 현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진국(李鎭局)

	1967. 12. 27.생(43세)	
	출 신 지	경남 고성
	직 위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학 력】

	동아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학사)
1996. 2.	동아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1997. 9.	독일 Halle-Wittenberg 대학교 졸업(법학석사)
2000. 4.	독일 Marburg 대학교 졸업(법학박사)

【경 력】

2002. 3. - 2007. 9.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형사사법연구센터장, 기획조정본부장
2004. 5. - 2005. 4.	법무부 질서위반법 제정특위 전문위원
2004. 5. - 2005. 4.	교육인적자원부 법학전문대학원도입을 위한 전문가위원회 전문위원
2005. 11. - 2006. 5.	재정경제부 테러자금조달억제법 제정특위 기획위원
2007. 10. - 2007. 12.	국무조정실 참여정부 사법개혁분야 평가위원회 평가위원
2007. 5. - 2007. 12.	국가인권위원회 수사분야 인권교육 교재개발 외부위원
2008. 1. -	[現] 한국법제연구원 입법평가연구 자문위원
2008. 1. -	[現] 한국비교형사법학회 상임이사(현: 출판이사)
2009. 1. -	[現]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자문위원
2009. 1. -	[現]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형사조정연구센터장
2009. 1. -	[現] 한국형사판례연구회 연구윤리위원
2010. 1. -	[現] 한국형사정책학회 감사
2011. 3. -	[現] 한국연구재단 전문위원
2011. 3. - 현재	[現] 아주대학교 교수회 감사

조석영(趙奭泳)

	1971. 3. 17.생(40세)	
	출 신 지	경북 영양
	직 위	대검찰청 검찰연구원

【학 력】

1990. 서울한영고등학교 졸업
 1998.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경 력】

2001. 사법연수원 제30기 수료
 2001.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2003.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 검사
 2004.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2007.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2009. 유엔 마약·범죄사무국(ODC) 파견 근무
 2011. [現] 대검찰청 검찰연구원